(건축-006) 공장 신축현장 안전난간 용접 중 추락사고

공사명	○○면 ○○리 ○○공장 건설공사			
사고일시	2019년 9월 24일(화) 09:33분경		기상상태	맑음
소재지	충청북도 진천군	사고 종류	기타(추락)	
구조물 손실	_	인적피해	사망 2명	
장비 손실	-	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여부	해당 ()	, 해당없음(())

가. 사고개요

1) 공사개요

○ 공사종류 : 공장

○ 공사면적 : 건축면적 898㎡, 연면적 1.567.01㎡

○ 공사규모 : 지상 4층

○ 공사기간 : 2019.8~2019.11

2) 사고경위

○ 작업자가 지상2층 바닥 H-Beam위에서 안전난간을 용접·시공하던 중 5m 아래로 추락함

3) 사고원인

- 고소작업 중 안전로프 등 안전가시설 미설치, 작업자의 안전고리 미체결 등에 따른 작업현장 안전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음
- 고소작업자들에게 특별안전교육*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
 - * (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의2) 5m 이상 건축물 골조 등의 조립·해체시 추락재해 및 위험요인 등 교육 실시

나. 재발방지대책

-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[작업발판의 끝·개구부(開口部) 등을 제외한다] 또는 기계·설비·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비계(飛階)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사업주는 상기와 같이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여 작업자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. 다만,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에 의한 사고발생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
사고 사진 사고현장 전경



사고 사진 상부 용접작업 위치(2층 바닥 보)

